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 처벌 범위 확대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 처벌 범위 확대	3
2.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에 대한 주취감경 폐지 의무화	6

I. 개요

1.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

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 처벌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대상에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과 ②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u>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u>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 ----- <u>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및 제35조의2의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이하 “응급의료기관등종사자”라고 한다) 및</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및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방해행위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보안인력에 대한 폭력 등으로 응급의료행위가 방해받는 경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어려워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보안인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여짐.

- 다만,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안인력의 업무 내용이 응급의료 등의 방해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최소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1)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할 것으로 보이며,

- 현행법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업무방해죄²⁾의 특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보안요원을 보호해 폭력예방 등의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함.

다만, 보안인력이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수행한다고 보건 어려워 하위 문구도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아울러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대한병원협회)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실 내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 등에 노출되는 종사자(보안인력 등)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2)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에 대한 주취감경 폐지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특례를 재량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u>아니한다</u>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심신장애 상태의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현행 「형법」상의 감경 규정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면제규정(제10조제1항)에 더해 감경규정(제10조제2항)을 추가하고, 주취감경 규정의 적용 배제를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취자의 응급의료 등의 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내 폭행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에서 유사한 처벌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취자에 대하여는 감경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적 시각에서 증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주취감경 적용 배제 관련 유사 입법례>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강행규정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 고려 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되어야 함이 타당한 바, 최소한 감경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여 즉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 (대한병원협회)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주취자의 폭력이 5년간 평균 65%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주취자 감경 규정 적용 배제 조항을 재량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